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1
----------	------

제출연월일: 2025. 8. 2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일률적 관행 개선을 위해 해당 지원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항1호)

나. 장기근속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삭제(안 제7조4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26800호, 2025. 6. 30.)

라. 입법예고: 2025. 6. 30. ~ 2025. 7. 21.(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전임휴직·가사휴직”을 “전임휴직·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을 “모범·친절·근무실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u>전임휴직</u>·<u>가사휴직</u> 공무원은 제외한다)</p> <p>2. ~ 5.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u>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p> <p>5. ~ 12.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 <u>전임휴직</u>· <u>가족돌봄휴직</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모범·친절·근무실적</u> ----- ----- -----</p> <p>5. ~ 12. (현행과 같음)</p>

근거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총무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안우영
- 연락처: (052)290-8373